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및
유기고양이 보호관리 용역
입찰유의서 및 계약서(안)

동 작 구

목 차

길고양이 증성화사업 및		
I 유기고양이 보호관리 용역	-----	1
입찰유의서		
II 용역이행계약서(안)	-----	2

본 입찰유의서 및 용역이행계약서(안)는 동작구에서 발생하는 길고양이 증성화사업 (TNR) 및 유기고양이 보호관리 용역을 수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구사항을 기술한 사항으로 입찰참가자 및 계약상대자는 본 내용을 숙지하여 입찰참가 및 용역업무 수행을 하여야 하며 계약서로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I .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및 유기고양이 보호관리 용역 입찰유의서

1.1 목 적

본 용역은 「동물보호법」 및 「서울특별시 동물보호조례」(이하 조례로 한다)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동작구청장이 발주하는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TNR) 및 유기고양이 보호관리 용역』(이하 “본 용역”이라 한다) 수행에 필요한 최소의 기본적인 요구사항을 기술한 자료로서 발주기관, 용역관리자 등 계약당사자간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과 본 용역을 원활하게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입찰참가자 및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입찰참가 및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2 유의사항

- 가. 본 입찰유의서 및 용역이행계약서는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TNR) 및 유기고양이 보호관리 용역"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요구조건을 제시한 것이므로 입찰참가자는 이 입찰안내와 관련법규 및 기타 관련도서(본 입찰유의서 및 용역이행계약서 및 입찰관련서류 등)의 내용을 참고하여 원활하게 본 용역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나. 본 입찰유의서 및 용역이행계약서는 본 용역의 성격과 업무범위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자료로서 계약 이후에는 계약서의 일부가 된다. 다만, 본 입찰유의서 및 용역이행계약서 내용상 오기 등의 사유발생시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간의 협의에 의하여 수정 또는 변경될 수 있다.
- 다. 본 길고양이 중성화사업(TNR) 용역예정금액은 길고양이 중성화사업(TNR) 용역 중 ‘중성화수술’ 및 ‘광견병예방접종’ 부분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세 산정금액이며, 유기고양이 보호 용역예정금액은 총액에 부가가치세 과세로 산정된 금액임.
- 라. 본 용역의 일부(포획 및 방사, 진료, 수술, 보호조치 등) 또는 전부에 대하여 타 단체(업소)에 재위탁·협정하여 운영할 수 없다. 단, 동물사체의 처리에 대해서는 「폐기물관리법」에 적법한 전문업소에 위탁할 수 있다. 이 때 위 사항에 대하여 위탁시 이에 대한 해당 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 마. 본 용역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본 입찰유의서 및 용역이행계약서에서 규정한 전문 구조인력 및 수의사에 대한 증빙서류, 동물병원개설신고증, 사업자등록증, 구조차량 및 구조장비 보유 내역서, 「동물보호법」 제15조 및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5조 별표[4] 규정에 따른 보호시설 평면도 및 시설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바. 동물보호법 및 “조례”, 기타 법령 그리고 본 입찰유의서 및 용역이행계약서에서 요구되는 자격 및 요건 등에 대한 자료 요구시 미제출하거나 요건에 부적합한 경우 용역계약이 해지된다.
- 사. 본 입찰유의서 및 용역이행계약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본 용역 수행 중 당연히 필요한 사항에 대해 계약자는 이를 수행하여야 한다.
- 아. 발주자는 입찰 참가자가 본 입찰서 작성과정에서 부담한 직·간접적 비용과 계약자 선정 및 낙찰과정에서 발생한 제경비 등에 대하여 일체의 보전책임을 지지 않는다.
- 자. 입찰 참가자 및 계약자 등이 제출한 서류에 대해서는 일체 반환되지 않는다.
- 차. 본 지침 등에 해석의 차이가 있을 경우 우리구의 해석에 따른다.

1.3 용역의 범위

- 가. 길고양이의 포획·운송·중성화수술·후처치 및 방사와 유기고양이의 포획·운송·처치·보호·사체처리·분양 및 기타 관리 등을 포함한 용역이행계약서의 사항으로 한다.
- 나. 기타 발주자와의 협의한 사항 등으로 한다.

1.4 사업개요

- 가. 사업명 :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및 유기고양이 보호관리 용역
- 나. 발주자 :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 다. 용역범위 : 용역이행계약서에 의함
- 라. 용역기간 : 계약일 ~ 2016. 12. 31.
- 마. 용역비용 : 단가계약(예산범위 내 지급)
- 바. 비용지급 : 용역수행자의 비용청구에 의하여 월 단위로 비용 정산·지급

II. 용역 이행 계약서

동작구청장(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과 용역수행자(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는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서울특별시 동물보호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및 서울특별시 길고양이 중성화(TNR)사업 표준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동작구 관내(이하 “관내”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TNR) 및 유기고양이 보호관리 사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용역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법” 및 “조례”에 의거 “발주기관”이 수행하는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TNR)(이하 “길고양이 TNR”이라 한다) 사무와 유기고양이의 보호·관리와 관련된 사무를 “계약상대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유기고양이”란 집안에서 반려동물로 사육되다 주인이 버리거나 주인을 잃고 길거리를 배회하는 집고양이를 말한다.

② “길고양이”란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여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를 말한다.

③ “길고양이 TNR”이란 길고양이를 포획하여 중성화수술후 특정 표식을 하여 포획된 장소에 방사하는 절차를 뜻하는 것으로 세계 공용어이다.

④ “동물보호관리시스템(APMS)”이란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운영하는 동물보호사업 전자관리체계(Animal.go.kr)이다.

제3조(용역범위) ① “계약상대자”는 “조례”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동물보호센터(이하 “보호센터”라 한다)의 운영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유기동물의 보호를 위하여 “법”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5조 별표[4]의 시설기준에 따른 보호센터의 설치·운영

2. “법” 제14조 및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포획한 유기동물의 보호조치, 반환 및 처분

②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길고양이 중성화(TNR)사업 표준지침」에 따라 “길고양이 TNR”과 관련된 사무를 수행한다.

③ 유기고양이의 개체별 보호관리 공고기간은 “발주기관”의 유기동물보호조치 공고일로부터 7일 이상으로 한다.

④ 유기고양이의 개체별 보호관리기간은 “발주기관”의 유기동물보호조치 공고일로부터 20일 이상으로 하되, 공고일로부터 10일이 지나도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법” 제20조 및 제21조에 의거 처리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기타 “발주기관”이 “길고양이 TNR” 및 유기동물 보호관리 사무에 필요하여 협조를 요청한 사항을 수행한다.

제4조(용역기간) 본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발주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상호 협의하여 그 기간을 2개월 이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제5조(사업수행의 기본방침) ① “계약상대자”는 “길고양이 TNR” 및 유기고양이 보호관리 사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의 능력을 발휘하여 성실하게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사무처리를 지연하거나 부당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며, 민원인 등에게 불필요한 서류를 요구하거나 부당하게 비용을 징수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정기적으로 직원들에게 “길고양이 TNR” 및 유기고양이 보호관리 사무수행과 관련하여 전반적인 교육을 실시하여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인력 및 장비의 확보) ① “계약상대자”는 “길고양이 TNR” 및 유기고양이 보호관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의사 1명 이상, 구조·포획 전담인력 1인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길고양이 TNR” 및 유기고양이 보호관리 업무가 안전하고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장비를 확보한다.

1. 이송 전담 차량 1대 이상
2. 고양이 생포용 덫 10개 이상, 기타 구조장비
3. 우리구 전용 동물보호용 케이지 20개 이상 확보
4. 치료용 장비 및 의약품 등 구비
5. 기타 고양이의 포획 및 관리에 필요한 장비 및 소모자재 등

제7조(유기동물의 포획, 단속)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 또는 주민으로부터 관내 유기고양이 발생에 대한 신고를 받은 즉시 출동하여 이를 포획, 보호·관리하고 그 결과를 “발주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고 접수시부터 포획까지의 처리시간은 6시간 이내로 하되 처리시간 지연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제8조(“길고양이 TNR” 수행)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길고양이의 발생이 빈번한 지역에 대해 “길고양이 TNR”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주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때 처리시간 지연 및 처리 시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길고양이 TNR”을 실시할 때 사전에 “발주기관”에게 일정을 통보하며, 실시 일정은 상호간 협의하여 조정한다.

제9조(유기동물의 인수) ① “계약상대자”는 주민 등으로 부터 포획의뢰 또는 단속시 발견된 유기 고양이를 포획하였을 때에는 해당 동물의 사진과 함께 별지 [서식5호]에 의거 기록·관리·비치·보관하며 포획 익일까지 “발주기관”에게 통보한다. 이 경우 동물보호관리시스템(APMS)에 게재하는 경우 통보한 것으로 본다. (단, 휴일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주민에 의하여 포획의뢰 또는 단속된 경우 신고인의 성명, 연락처, 포획일시, 포획장소, 동물의 품종 등을 자세히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길고양이 TNR” 보고) ① “계약상대자”는 “길고양이 TNR” 실시 후 별지 [서식 2호]를 작성하고 확인날인 또는 서명하여 익일까지 “발주기관”에게 보고한다. 이 경우 동물보호관리시스템(APMS)에 게재하는 경우 통보한 것으로 본다.

② 동물보호관리시스템(APMS)에 게재할 때에는 길고양이의 포획, 중성화 수술, 방사 3단계로 나누어 입력하며, 각 단계사업 실시 후 24시간 이내에 입력하여야 한다. (단, 휴일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주민에 의하여 포획의뢰 또는 단속된 경우 신고인의 성명, 연락처, 포획일시, 포획장소 등을 자세히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인수공통전염병 등 질병 모니터링을 위한 시료 채취 협조) ① “계약상대자”는 인수공통전염병 등의 질병 모니터링을 위하여 “길고양이 중성화사업(TNR)” 대상 길고양이의 혈액 등 검사 시료를 채취하여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이하 검사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② ①의 사항에서 “계약상대자”가 연간 수행하여야 할 검사 시료의 채취 물량은 30건 (두/건)이며, 시료 물량은 가감할 수 있으며 시료 물량을 변경할 때는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③ 혈액 시료 채취에 필요한 혈장 튜브, 이동상자 등은 검사기관에서 제공한다.

④ ①의 사항의 검사시료 채취시 채혈 및 취급 등 방법은 다음과 같다.

- 검사시료의 혈액은 5ml이상이어야 한다.
- 채혈한 혈액 시료는 혈장 튜브에 담아 냉장 보관(4℃~10℃)하여야 하며, 이때 해당 튜브에는 시료 개체의 일련번호, 포획장소(도로명+건물번호 또는 동명+지번), 포획날짜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 ※ 일련번호는 “자치구명+연번”으로 표시하되,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의 공고번호와 연계될 수 있어야 한다.
- 혈액 샘플은 채혈 시점에서 24시간 이내 검사기관에 송부되어야 하며 배송에 대한 비용은 검사기관이 부담한다.

제12조(관리 및 지도·감독) ① “계약상대자”는 인수한 동물에 대하여 “법” 및 “조례” 규정에 의거 적절한 사양관리 및 치료를 실시한다.

②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보호·처리하고 있는 동물의 건강 및 보호·처리상태를 필요시 확인 점검할 수 있으며, 보호·처리상태가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시정명령을 불이행할 경우 용역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용역계약이 취소될 경우 “발주기관”은 즉시 “계약상대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손해나 피해 발생시 “계약상대자”가 배상하여야 한다.

제13조(공고 및 처분) ① “계약상대자”는 유기동물을 보호시설에 보호조치 하였을 경우 “발주기관” 또는 유기동물 소유자 등이 확인할 수 있도록 사진, 종류, 특징, 발견일시, 발견장소 등을 기재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6호서식]에 의거 동물보호관리시스템(APMS)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유기동물을 “발주기관”의 공고일로부터 20일 이상 보호조치 하며 동물의 건강상태 및 예후 등을 판단하여 제15조 내지 제16조에 따라 처분할 수 있다.

제14조(유기동물의 반환) ① 공고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보호 중인 유기동물의 소유자가 나타날 경우 “계약상대자”는 반환 신청한 자에게 동물의 소유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사진이나 기록, 동물의 반응 등으로 판단하여 소유자임을 확인하고 반환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유기동물을 반환한 경우 해당 소유자의 인적사항 및 반환 당시 소유자와 유기동물의 사진을 [서식7호]와 동물보호관리시스템(APMS)에 기록·관리·비치·보관하여야 하며 그 기록 내역을 반환 후 익일내로 “발주기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물보호관리시스템(APMS)에 게재하는 경우 통보한 것으로 본다.

제15조(유기동물의 기증 및 분양) ① “계약상대자”는 공고일로부터 10일이 지난 유기동물을 기증 또는 분양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유기동물을 기증 또는 분양한 경우 해당 기증·분양받는 자의 인적사항 및 입양 당시 유기동물과 기증·분양받는 자의 사진을 [서식6호]와 동물보호관리시스템(APMS)에 기록·관리·비치·보관하여야 하며 그 기록 내역을 기증·분양 후 익일내로 “발주기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동물보호관리시스템(APMS)에 게재하는 경우 통보한 것으로 본다.

③ “계약상대자”는 분양 및 기증시 유기동물을 영리적 목적을 위해 사용하거나 확대할 우려가 있는 사람을 선별하여, 위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여야 하며 분양 및 기증 후 나타

나는 법적인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유기동물을 기증 또는 분양하는 경우 중성화수술, 예방접종 등에 동의하는 자에게 우선으로 분양하여 책임감 있는 사람에게 기증·분양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기타 유기동물 처분) ① “계약상대자”는 보호기간이 종료된 유기동물을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처리 곤란한 경우에는 안락사 처리를 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보호조치 중인 동물에게 “법” 제22조(동물의 인도적인 처리 등)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보호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수의사의 판단에 따라 안락사 등의 인도적인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러한 인도적인 조치는 수의사에 의해 시행되어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안락사 또는 폐사되었을 경우 유기동물의 사체를 합법적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처리 후 [서식5호]와 동물보호관리시스템(APMS)에 기록·관리·비치·보관하여야 하며 이에 본 항에 따라 처리한 사유와 수의사의 확인서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이 기록 내역은 처리 후 익일내로 “발주기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동물보호관리시스템(APMS)에 게재하는 경우 통보한 것으로 본다.

제17조(처리비용의 지급 및 집행) ① 위탁관리비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출동비, 인건비, 수송비, 치료비, 중성화수술비, 사료비, 관리비, 처리비용 등을 말한다.

② 유기고양이의 위탁관리비는 1건당 일금 _____ 원으로 하고, 위탁관리비 지급시 한배 새끼의 경우 한배 새끼들을 1건으로 하여 당월 처리 건수를 합산하여 익월에 지급한다.

③ “길고양이 TNR”의 위탁관리비는 1건당 일금 _____ 원으로 하고, 당해 월 처리건수를 합산하여 익월에 지급한다.

④ 위탁관리비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근거하여 별지 [서식1호]에 따라 지급한다. 단, “계약상대자”가 사업을 성실히 이행치 않을시 는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⑤ “계약상대자”는 시에서 지정한 시민자원봉사자가 포획 및 방사한 길고양이에 대해서는 길고양이 중성화(TNR)사업 표준지침에 따른 중성화수술 및 후처치를 하여야 한다.

단, 중성화수술과 후처치만 하는 경우는 위탁관리비의 60%만 지급(중성화된 개체 자료 관리 및 시스템 등재 등 제반소요비용을 포함)한다. [서울특별시 동물보호과-2757, 2015.9.1 「2015년 길고양이 중성화(TNR)사업 추진계획」]

제18조(위탁관리비 지급 제외 등) ① 신고인의 연락처가 불분명한 경우 또는 본 계약서 제9조, 10조의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해당 건에 대하여 위탁관리비 산정시 제외한다.

- ② 동물을 유기하는 사람에게 직접 인수받거나 입양된 유기동물이 파악된 경우 유기동물 처리건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 ③ 구조된 유기동물 중 견치(송곳니)가 자라지 않은 동물은 처리 건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 ④ “발주기관”은 본 계약이 중도에 해지되는 때에는 그 해지일까지 “계약상대자”가 처리한 실적에 따라 사업비를 지급하되, 포획·보호 중인 유기동물의 보호기간이 모두 만료된 후 10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한다.
- ⑤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의 제5조, 제7조, 제8조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업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9조(관계법령 등의 준수) “계약상대자”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법”, “조례” 등 관계 법령과 “발주기관”의 관련 법규, 지침 및 이 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단, “법” 및 “조례” 등 관계법령이 개정시 개정된 “법” 및 “조례”를 따른다.)

제20조(처리실적 보고) ① “계약상대자”는 “길고양이 TNR” 및 유기고양이 보호관리 실적을 별지[서식 2호], [서식 3호], [서식4호], [서식5호]에 의거 매월말 기준으로 작성하여 익월 10일내 “발주기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서식5호]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APMS)에 게재하는 경우 통보한 것으로 본다. 또한 서식을 동물보호관리시스템(APMS) 전산출력분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폐사동물에 대하여는 폐사사유를 기재하고 수의사의 확인 서명이 있어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길고양이 성별, 몸무게, 포획 및 방사장소, TNR과정 사진(포획, 시술부위가 포함된 중성화수술 후 모습, 주변 장소가 확인 가능한 방사 전 모습)을 동물보호관리시스템(APMS)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21조(손해배상 등) ① “계약상대자”는 이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귀책사유가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주기관”이 제3자에게 이 사업과 관련된 손해 배상 등을 한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이를 “발주기관”에 배상하여야 한다.

제22조(계약의 해지 등) ① “발주기관” 또는 “계약상대자”가 위탁계약을 중도에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지 예정일 1개월 전까지 그 사유를 기재한 문서로써 상대방에게 통보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② “발주기관”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계약의 해지 등을 할 수 있다.

1. “계약상대자”가 계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반한 경우

2. “계약상대자”가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발주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3. “계약상대자”가 시정명령 등을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4. “계약상대자”가 “법 및 ”조례“에 의거 계약 해지사항에 해당될 때
 5. “계약상대자”에게 공익상 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6. “발주기관”이 예산부족으로 사업비를 지급할 수 없을 경우
- ③ “발주기관”이 제2항 제1호~제4호의 사유로 계약의 해지 등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계약상대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④ 제2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 해지 등이 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로 인한 손해배상 등을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 ⑤ 이 계약이 해지되거나 만료된 때에는 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계약상대자”의 직원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제23조(계약의 해석) 이 계약에 정하지 않은 문제가 발생하거나 해석이 이견이 있는 때에는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른다.

제24조(계약의 효력 등) ① 이 계약은 계약일로부터 계약사항의 이행완료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다만, 민·형사상의 사건·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건·사고가 종료되는 때까지 그 사건·사고와 관련하는 조항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② 민·형사상의 분쟁 발생시 관할 법원은 “발주기관” 소재지로 한다.

제25조(노동법상의 책임과 교육)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의 직원에 대한 사용자로서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직업안정법, 사회보험법령 기타 근로자에 대한 법률상의 책임을 모두 지고 노무관리를 하여야 하며, 제반 법령에서 정하는 보험에 가입하기 위한 비용을 부담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업무이행에 종사하는 “계약상대자”의 직원에 대하여 안전상, 보건상 책임을 지고, 안전관리 및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6조(질서유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 대하여 계약업무의 처리에 종사하는 직원의 교육지도에 만전을 기하여 질서규율 및 풍기유지에 책임을 지며, 신속한 업무처리에 노력함과 동시에 “발주기관”의 신용을 유지하고 “발주기관” 및 그 거래처, 주민 등에 폐를 끼치지 않도록 한다.

제27조(비밀유지 의무)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업무의 이행에 있어 알게된 상호간의 업무상의 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에 대하여도 비밀준수를 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근로자에 의한 비밀누설시에는 “계약상대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제28조(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계약상대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필요한 사항 외의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알게 된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노출시켜서는 안 되며, 불필요한 개인정보 유출시에는 “계약상대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서식 1-2호】

기 성 계

1. 용역명 :
2. 계약금액 : \ (금)
3. 기성금액 : \ (금)
3. 계약일자 :
4. 착공일자 :
5. 기성일자 :
6. 준공기한 :

상기와 같이 기성하였기에 기성계를 제출합니다.

2016년 월 일

감독공무원 경유	
소속	
직급	
성명	(인)

위계약자

주소 :

상호 :

대표자 :

(인)

동작구(분임)경리관 귀하

【서식 1-3호】

기 성 검 사 원

- 1. 용역명 :
- 2. 계약금액 : \ (금)
- 3. 기성금액 : \ (금)
- 3. 계약일자 :
- 4. 착공일자 :
- 5. 기성일자 :
- 6. 준공기한 :

위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서 귀청에서 지시한대로 어김없이 준공하였으며, 만약 용역의 수행 감독 및 검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견될 시는 하자 담보기간 전후를 막론하고 실액변상 또는 재용역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기성검사원을 제출합니다.

2016년 월 일

감독공무원 경유	
소 속	
직 급	
성 명	(인)

위계약자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동작구(분임)경리관 귀하

【서식 2-2호】

일련번호 :	
구조시 이미지	중성화 수술 전 이미지
포획	중성화수술
중성화 수술 후 이미지	방사시 이미지
중성화수술	방사

【서식 3호】

길고양이 TNR 월별 실시 보고 (2016년 월)

연 번	포획			개체특징		불임시술		사후처리			비 고
	일시	민원인	포획위치	성별	특징	일시	시술자	표식 방법	방사 일시	방사장소	

위와 같이 길고양이 T.N.R 처리 내역을 보고합니다

2016년 월 일

보고자: (인)

확인수의사 성명 : (인)

동 작 구 청 장 귀하

【서식 5호】

보호동물 개체별 관리카드

1. 관리번호							
2. 구조정보	신고일		구조일				
	신고자		주소 (전화번호)				
	구조자		구조장소				
	기타						
3. 동물정보	축종		품종		성별	암 / 수 / 미상	
	나이		중성화	O / X / 미상	체중		
	특징						
4. 보호동물 사진							
보호동물 사진1(3X4C _m)		보호동물 사진2(3X4C _m)		보호동물 사진3(3X4C _m)			
5. 건강상태 및 진료 사항							
일자		담당자		내용			
6. 처리결과							
처리일		처리결과		내용		비고	
년 월 일	[]반환 []분양 []기증	이름		생년 월일		처리 사진 첨부	
		주소		연락처			
		동물등록번호					
	[]폐사 []안락사		사유		확인자		
	[]방사		방사 장소		확인자		
	[]기타						
7. 기타							

분양(기증) 동물	종류(품종)		공고번호(APMS)	
	성 별		기타특징	
입양신청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e-mail	
	입양신청사유			

유기동물을 입양하는 것은 입양받은 유기동물에게 또 한번의 삶을 선물하는 값진 일이기도 하지만, 동물을 새로운 가족으로 맞이하는 것은 많은 책임과 의무가 뒤따르는 일이기도 합니다. 입양 신청을 하기 전에 아래 항목들을 읽고 신중히 답해주세요

사전고려항목	답변
1. 유기동물을 입양하겠다는 결정에 가족 모두가 동의하십니까 ?	
2. 입양된 동물을 주로 돌보는 사람(대소변 치우기, 산책, 목욕 등)은 누구입니까 ?	
3. 입양동물은 재유기나 유실을 예방하기 위해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방식으로 동물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대행수수료(10,000원)는 입양자 부담입니다. 동물등록에 동의하십니까 ?	
4. 앞으로 이사, 이민, 결혼 등의 이유로 반려동물을 키우지 못하게 될 경우가 되면 반려동물은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	
5. 입양동물이 나이들거나 병이 걸릴 경우에도 끝까지 반려동물로서 돌봐주시겠습니까 ?	
6. 가족 중에 반려동물에게 알려지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7. 입양된 동물이 화장실 교육이 안 되었거나 밤에 짖는 등 문제행동으로 인한 불편이 있을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8. 반려견은 주기적으로 산책을 해주어야 합니다. 1주일에 몇 번 반려견과 산책이 가능하십니까 ?		
입양신청자 상세 정보		
귀하의 집은 어떤 형태입니까 ?	단독주택 () 아파트() 다세대/빌라() 오피스텔() 기타()	
입양동물과 함께 살 가족 구성원은 어떻게 되십니까?		
현재 또는 과거에 반려동물을 키워보신 경험이 있습니까? 있다면 어떤 동물을 몇 년간 키웠는지 적어주세요		
<p>위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하며 동물보호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유기 동물 입양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일 : 20 . . .</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자 :</p>		

【서식 7호】

유실동물 반환 신청서

반환 동물	종류(품종)		공고번호(APMS)	
	성 별		관리번호(보호 센터)	
소 유 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분실사유:			
소 유 자 교 육	세부 내용			소유자 확인
	3개월령 이상된 반려견은 동물등록을 하여야 한다. (반환 후 10일 이내에 소재지 관할 대행기관에서 동물등록하고 등록 신청서 사본을 관할구청에 제출할 것(fax)) 미등록시 동물보호법에 따라 4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반려견과 외출할 때는 반드시 목줄 등 안전장치(맹견의 경우 입마개)를 하고 인식표(주인의 성명, 전화번호, 동물등록번호)를 부착하여야 하며, 비닐봉투 등을 휴대하여 배설물이 있을 경우 즉시 수거하여야 한다.			
	반려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의 급여와 급수·운동·휴식 및 수면을 보장하고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경우에는 신속한 치료 등 필요한 조치 등 적절한 사육·관리를 하여야 한다.			
반려동물을 합리적인 이유없이 죽이거나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지 않아야 한다.				
<p>본인은 상기 동물의 소유자로서 동물보호법에 따른 동물보호·관리 의무를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동물보호법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 동물의 반환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인(인수자) :</p> <p>○ ○ 구청장 귀하</p>				
인계내역	인계일자		인계자	○○보호센터 (서명)
비고	1. 사진 첨부 2. 신분증 사본(주민등록번호 제외)			

【서식 8호】

폐사체 처리내역서

본 사업자는 유기동물 폐사체를 아래와 같이 처리하였기에 기록합니다.

처리 일자 :

처리 기관 :

처리 내역

총 건수	중량	개체관리번호(모두 나열)	비고

인 계 자 : (인)

인 수 자 : (인)

붙임 1)

동물보호센터의 시설기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관련 [별표4])

1. 일반기준

- 가. 진료실, 사육실, 격리실 및 사료보관실을 각각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동물 구조 및 운반용 차량을 보유하여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 또는 위탁보호센터 운영자가 동물에 대한 진료를 동물병원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진료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나. 동물의 탈출 및 도난방지, 방역 등을 위하여 방범시설 및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
- 다. 시설의 청결유지와 위생관리에 필요한 급수시설 및 배수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바닥은 청소와 소독이 용이한 재질이어야 한다. 다만, 운동장은 제외한다.
- 라. 보호동물을 인도적인 방법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동물의 수용시설과 독립된 별도의 처리공간이 있어야 한다. 다만, 동물보호센터 내 독립된 진료실을 갖춘 경우 그 시설로 대체할 수 있다.
- 마. 동물 사체를 보관할 수 있는 잠금장치가 있는 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 개별기준

- 가. 진료실에는 진료대, 소독장비 등 동물의 진료에 필요한 기구·장비를 갖추어야 하며, 2차 감염을 막기 위해 진료대 및 진료기구를 위생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나. 사육실은 다음의 시설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 1) 동물을 위생적으로 건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온도 및 습도 조절이 가능하여야 한다.
 - 2) 채광과 환기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3) 사육실이 외부에 노출된 경우, 직사광선, 비바람 등을 피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다. 격리실은 다음의 시설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 1) 독립된 건물이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되어야 한다.
 - 2) 외부환경에 노출되어서는 아니 되고, 온도 및 습도 조절이 가능하며, 채광과 환기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 3) 전염성 질병에 걸린 동물은 질병이 다른 동물에게 전염되지 않도록 별도로 구획되어야 하며, 출입구에 소독조를 설치하여야 한다.
 - 4) 격리실에 보호중인 동물에 대해서는 외부에서 상태를 수시로 관찰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

다만, 해당 동물의 습성상 사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라. 사료보관실은 청결하게 유지하고, 해충이나 쥐 등이 침입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하며, 상호 오염원이 될 수 있는 그 밖의 관리물품을 보관하는 경우 서로 분리하여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

마. 진료실, 사육실 또는 격리실 내에서 개별 동물을 분리하여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크기는 동물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충분한 크기이어야 하며, 개와 고양이의 경우 권장하는 크기는 아래와 같다.

가) 소형견(5kg 미만): 50 × 70 × 60(cm)

나) 중형견(5kg 이상 15kg 미만): 70 × 100 × 80(cm)

다) 대형견(15kg 이상): 100 × 150 × 100(cm)

라) 고양이: 50 × 70 × 60(cm)

2) 시설의 바닥이 철망 등으로 된 경우 철망의 간격이 동물의 발이 빠지지 않는 규격이어야 한다.

3) 시설의 재질은 청소, 소독 및 건조가 쉽게 되고 부식성이 없으며 동물에 의해 쉽게 부서지거나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하며, 시설을 2단 이상 쌓은 경우 충격에 의해 무너지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4) 배설물을 처리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추고, 매일 1회 이상 분변 등을 청소하여 동물이 위생적으로 관리될 수 있어야 한다.

5) 동물을 개별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외부에 표지판이 붙어 있어야 한다.

바. 동물구조 및 운송용 차량은 동물을 안전하게 운송할 수 있도록 개별 수용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화물자동차인 경우 직사광선, 비바람 등을 피할 수 있는 장치가 설치되어야 한다.